

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유재산물품관리조례(안)

심 사 보 고 서

2006. 2.

행 정 위 원 회

1. 審 査 經 過 .

가. 제출일자및 제출자 : 2006년 2월 13일 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06년 2월 17일 회부

다. 상정일자 : 2006년 2월 21일

제119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상정의결

2. 提 案 說 明 의 要 旨 (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흥성배)

가. 제정이유

-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령 제정에 따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우리구 구유재산관리조례와 물품관리조례를 각각 폐지하고,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조례에 위임한 사항 제정 및 관리·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무상 사용기간 산정 기준 조정 (안제16조)
 - 기부채납일 또는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명시
- 토지의 지하·지상 공간에 대한 대부료 산정 근거 마련 (안제28조)
 - 「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」을 준용
- 대부료·사용료 납기일 조정 (안제33조)
 -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던 대부료·사용료 납기일을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함
- 수의 매각대상 범위 확대 (안제38조)
 -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수의매각 범위 확대
 - 수의 매각 면적 : $200\text{m}^2 \rightarrow 300\text{m}^2$
 - 건물 발생시기 : 1981.4.30 이전 \rightarrow 1989.1.24 이전
- 물품관리대상 비품 하한선 조정(안제61조 별표2)
 - 내용연수 1년이상, 취득가격 10만원 이상으로 조정

-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, 물품관리조례 폐지(부칙 안제2조)
- 다. 참고사항
- 관계법령
 -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(법률제7665호, 2005.8.4공포, 2006.1.1시행)
 -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(대통령령제19227호, 2005.12.30공포, 2006.1.1시행)
- 합의사항 : 필요없음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입법예고(2006. 2. 2 ~ 2006. 2. 8) 결과 : 의견없음

3.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(專門委員 김찬재)

- 법령의 구성 및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제안되었고, 2005.11.28에 서울특별시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따랐으며, 사용료 · 수수료의 징수 기준은 타 구와 형평을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됨으로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 하겠음.
- 안제10조 제2항의 “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(연체료.변상금을 포함한다)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”는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15조의 수입금의 직접 사용금지, 동법 제16조의 수입대체 경비의 직접사용규정에 위배됨으로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,
- 안제36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)제2항에 있어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의 오기정정이 관보16172호(2006.1.16)로 있었으므로 제1호 “영 제38조 제1항 제7호·제8호·제13호의 규정”은 “영 제38조제1항 제6호·제7호·제12호의 규정”으로, 제5호 “영 제3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”은 “영 제3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”으로 정정되어야 할 것이며,
같은 이유로 안제38조(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)제1항의 “영 제38조 제1항 제24호”는 “영 제38조 제1항 제23호로 정정되어야 할 것임.
- 부칙에 있어서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의 “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것으로 본다”는 새 조례 제정까지의 현 조례의 존속경과 규정으로 사료되므로,
현 조례에 의거 처분된 사항의 효력·경과 조치로 “부칙 제3조(사용·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에 의하여 사용 · 수익허가 · 대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”는 규정을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修正案 要旨

가. 수정요지

- 지방재정법 제15조의 수익금의 직접 사용금지, 동법 제16조의 수입대체 경비의 직접사용 규정에 위배됨으로 제10조제2항을 삭제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의 오기정정이 안 제36조제1호, 제5호 및 안 제38조제1항 수정
- 행정의 연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칙 신설

나. 수정 주요골자

- 안 제10조제1항을 본문으로 하고, 안 제10조제2항을 삭제
- 안 제36조제3항제1호 “영 제38조제1항제7호.제8호.제13호” 를 “영 제38조 제1항제6호.제7호.제12호”로 수정
- 안 제36조제3항제5호 “영 제38조제1항제5호” 를 “영 제38조제1항제4호”로 수정
- 안 제38조제1항 “영 제38조제1항제24호” 를 “영 제38조제1항제23호”로 수정
- “부칙 제3조(사용.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에 의하여 사용.수익허가.대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”를 신설

5. 審査結果 : 修正案 可決